

##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결성·운영에 따른

# 업무협약서

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(위탁기관, 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과 한국콘텐츠진흥원(수탁기관, 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협력할 것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아특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(제1호)(이하 “투자조합”이라 한다)의 위탁·수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동법 제15조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‘투자조합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한 금 삼십팔억사천만원 (₩3,840,000,000) 및 일반투자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.
- ② ‘위탁’이라 함은 추진단장의 권한 중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을 진흥원장에게 맡겨 진흥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 및 책임관리)

- ① 추진단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1. 문화체육관광부 출자금 관리·운영
  2. 업무집행조합원(창업투자회사)의 선정·출자·회수 및 조합재산의 배분
  3. 투자조합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감독
  4. 투자조합 운영 성과 평가 및 투자의무 실행여부 감독
  5. 투자조합 투자대상 업체 및 관련제품의 육성·지원

6. 투자심사(투자심의위원회 참석) 등 조합의 결성 시부터 운영 및 해산(투자금액 회수 포함)시까지 수행하는 투자조합 관련 업무 일체
- ② 상기 제①항에 의거 투자조합 관리책임은 진흥원이 담당한다.

### 제4조(투자대상)

- ① 투자조합 투자누계액의 50%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에 투자하고 그 밖에 문화산업 등에 투자한다.
- ② 투자조합의 출자 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.

분야	주목적 투자대상
문화산업 (CG·3D, 애니메이션·캐릭터, 게임 등)	1.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및 프로젝트로써 광주지역에서 소비되는 제작비용이 당해 투자조합의 투자금 대비 80% 이상인 콘텐츠
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등	2. 아특법에 의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.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, 개발, 활용에 관한 사업 4.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특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

### 제5조(관리자의 의무 및 상호협조)

- ① 진흥원은 투자조합 운영에 있어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진단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6조(업무보고)

- ① 진흥원은 조합규약에 명시된 조합운영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

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'정기보고'라 함은 투자조합 규약에 명시된 '반기보고'와 '결산보고'를 말하며, '수시보고'는 추진단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.

#### 제7조(업무집행 점검 등)

- ① 추진단은 투자내역 등 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위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추진단은 상기 제①항에 의거, 조합운영과 관련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, 업무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손실방지)

- ① 진흥원은 추진단이 출자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② 진흥원이 본 협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.

#### 제9조(위탁과 관련 업무대행수수료)

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수수료는 조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정경비 등으로써 추진단은 진흥원에 본 협약 제2조제①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합 납입출자금 총액의 년 100분의 2의 범위내로 하되 지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10조(운영협약의 기간 및 효력)

- ①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조합존속 기간 동안 협약이 유지 된다. 단, 조합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 제7조제②항 이외의 사유로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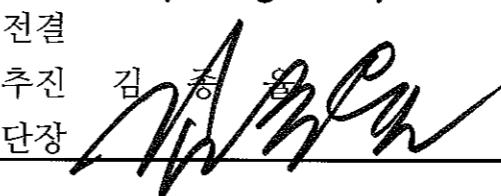
#### 제11조(기타)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(날인)한 후 추진단과 진흥원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. 5. 4.

<위탁기관>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 
최 광 식

전결  
추진  
단장 김종율  


<수탁기관>

한국콘텐츠진흥원장

홍상표

